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장세구 의원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세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장세구 의원(1인)
찬 성 자: 김낙관·김원섭·소진혁·신용하
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7인)

1. 제안이유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상품권 발행 권면 금액 추가 및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품권 유통량 증가를 통한 관내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가. 상품권 발행 권면 금액 추가 등(안 제5조)
- 나. 할인율 조정 및 개인 구매 한도액 상향 조정 등(안 제15조제5항, 제6항)
- 다.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제26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 나. 부서검토: 일자리경제과 의견제출(붙임)
-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미사랑상품권”을 ““구미사랑상품권””로, “구미시 또는”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을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을 “상품권”으로,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을 “카드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으며,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은 달리 할 수 있다”로 한다.

1. 2천원권

제15조제5항 본문 중 “권면”을 “권면 및 구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위를 초과하거나 할인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제1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상품권 구매 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 중 “「상법」의 규정”을 “「상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 5. (생략)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② (생략)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구미시 (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형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2. (생략)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시 -----

--.

④ 상품권-----
----- 카드형 -----

-----.

1. 2천원권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⑤ -----
같으며,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은 달리 할 수 있다.

1. ~ 7. (생략)

⑥ (생략)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④ (생략)

⑤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⑥·⑦ (생략)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1. ~ 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권면 및 구매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위를 초과하거나 할인 없이 판매할 수 있다.

⑥ 상품권 구매 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26조(준용) -----

----- 「상법」 -----
-----.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조 례 명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권 발행 권면 금액 추가 등(안 제5조) ○ 할인율 조정 및 개인 구매 한도액 상향 등(안 제15조제5항, 제6항) ○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제26조)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할인율 조정 및 개인 구매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 상품권 유통량 증가를 통한 관내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며 기술적인 추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5조제6항에 따른 개인 구매 한도액 상향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향후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며,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기술적인 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서덕림(☎480-2623)